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1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력수전예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서명칸” 추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동법 시행령 ‘제5조의4’가 ‘제5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elrose99@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8, 팩스 0

44-203-4756, 전자우편 elrose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 - 제5조의5제5호에 ----- ----- -----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table><tr><th>접수번호</th><th>접수일자</th><th>처리기간</th><th>90 일</th></tr><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회사명 또는 상호</td><td>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td></tr><tr><td colspan="3">대표자 성명</td></tr><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2">전 화 번 호</td></tr><tr><td colspan="2">팩 스 번 호</td></tr></table> 전력수전 개요 수용가명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전력사용 용도 공급방식 전압 전력수전 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수전설비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table><tr><th>접수번호</th><th>접수일자</th><th>처리기간</th><th>90 일</th></tr><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회사명 또는 상호</td><td>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td></tr><tr><td colspan="3">대표자 성명</td></tr><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2">전 화 번 호</td></tr><tr><td colspan="2">팩 스 번 호</td></tr></table> 전력수전 개요 수용가명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전력사용 용도 공급방식 전압 전력수전 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수전설비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 (서명 또는 인) 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뒤 쪽)	(뒤 쪽)																																
처리절차 (생 략)	처리절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3 - 3908